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1470
----------	------

2020. 04. 22
도시계획관리위원회

1. 대안의 제안경위

- 이준형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1305번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정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1399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함.

2. 대안의 제안이유

- 도시재생기금 재원 중 하나인 출연금의 용어를 정비하고, 도시재생기금의 사용 용도를 추가하여 세분화하고, 세분화된 기금의 용도 외에 사용가능한 요건을 강화하여 재원운용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도시재생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 운용기준을 여건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도시재생기금의 조성 재원 중 하나인 “출연금”의 용어를 “기부금품”으로 변경하고(안 제5조제5호),

- 나. 긴급한 현안이나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비용 발생 등 내·외부적 환경 변화와 다년간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탄력적·신축적으로 확보·운용하기 위해 도시재생기금 용도를 추가·세분화하며(안 제6조제3호~제7호 신설),
- 다. 도시재생기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적용하도록 강화하고(안 제6조제12호),
- 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를 대면심의 외에도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는 경우를 신설함(안 제12조제5항 신설).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 중 “출연금”을 “기부금품”으로 하고, 제6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같은 조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도시재생사업 관련 전문가 활용비 및 기술비
4.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5. 도시재생활성화지역내 문화유산 등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나목의 범위안에서의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조사연구비
7. 사업기간이 종료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내 마을기업 등의 사전기획비 및 운영비

제6조제7호를 같은 조 제12호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12.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것으로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업으로,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비용

제12조제4항 중 “출석(회의 장소에 직접 출석한 경우를 말한다.)”을
“출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같은 조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1.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대비표(대안)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 4. (생략) 5.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친 민간인(단체)의 <u>출연금</u> 6. (생략)	제5조(기금의 조성) ----- -----. 1. ~ 4. (현행과 같음) 5. ----- ----- ----- <u>기부금품</u> 6. (현행과 같음)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 2.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제6조(기금의 용도) ----- -----. 1. ~ 2. (현행과 같음) 3. <u>도시재생사업 관련 전문가 활용비 및 기술비</u> 4. <u>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u> 5. <u>도시재생활성화지역내 문화유산 등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u>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나목의 범위안에서의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조사연구비 7. <u>사업기간이 종료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내 마을기업 등의 사전기획비</u>

3. 도시재생기금의 조성 ·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주민협의체가 추진하는 사업비

5. 차입금 및 이자 상환

6. 여유자금의 예탁 및 예치

7.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것으로 도시재생 및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③ (생략)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회의 장소에 직접 출석한 경우를 말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안건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 3. (생략)

및 운영비

8. (현행 제3호와 같음)

9. (현행 제4호와 같음)

10. (현행 제5호와 같음)

11. (현행 제6호와 같음)

12.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것으로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비용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출석-----

----- . ---,

----- .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1.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⑤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⑥ (현행 제5호와 같음)

⑦ (현행 제6호와 같음)

⑧ (현행 제7호와 같음)

⑨ (현행 제8호와 같음)